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운영 효율성을 제고
- 시설 사용기준 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기준 제시로 사용료 징수 등에 명확성 확보

3. 주요내용

- 연수원 사용료(생활관) 인상(별표)
 - 공무원교육관 : 5,000원 ⇒ 10,000원
 - 도민교육관 : 3,000원 ⇒ 5,000원
- 생활관 퇴실시간 및 연수원 1일 사용기준 시간 제시(별표)
-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 제시(별표)

4. 검토의견

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기준 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며,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은

- 연수원(생활관) 사용료 인상(별표)
 - 공무원교육관 : 5,000원 ⇒ 10,000원
 - 도민교육관 : 3,000원 ⇒ 5,000원
- 생활관 퇴실시간 및 연수원 1일 사용시간 제시(별표)
 - 퇴실시간 : 다음 날 13:00까지
 - 1일 사용기준 : 8시간
-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 제시(별표)
 - 1시간 초과 시 마다 당해 사용료의 25% 가산
 -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
- 금번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시설 사용기준 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용료 징수 등에 있어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,
-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시설물 사용료는 2001년 조례 제정 이후 인상한 사례가 없으며, 시설물 관리비용 산정에 따라 적정하게

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<참고자료>

▣ 생활관 세입 징수액 및 사용현황

○ 생활관 세입 징수액 (단위:천원)

년도별	계		생활관		비고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
계	554	16,490	547	15,900	
2009	342	12,660	335	12,070	
2010	212	3,830	212	3,830	

○ 생활관 사용현황(비합숙)

구 분	사용인원	비고
계	547건 865명	
2009년	335건 652명	공무원 550명 일반인 102명
2010년 6월말까지	212건 213명	공무원 211명 일반인 2명

○ 생활관 일반인 사용 현황

구 분	사용기관	비고
계	3건 / 104명	
2009년	대신정기화물 100명 (주)아이엔지에듀 2명	
2010년	개인(교육 강사) 2명	

▣ 생활관 사용료 산출자료

(단위 : 원)

난방비	냉방비	전기료	냉온수	오수처리	방역비	청소비	세탁비	쓰레기 봉투	화장지	기계실 당직근로
14,171	8,526	246	1,500	381	37	1,176	2,650	208	450	2,941

【 생활관 (1실당) 】

□ 항목별 세부내역

- 1일 난방비 = 보일러 및 순환펌프 전기료+유류대
 $(23\text{kW} \times 123\text{원/kWh} + 55\text{ l/h} \times 1,200\text{원/l}) \times 7\text{시간} \div 34\text{실} = 14,171\text{원}$
- 1일 냉방비 = 냉온수기 및 순환펌프 전기료+유류대
 $[(44\text{kW}) \times 123\text{원/kWh} + 30\text{ l/h} \times 1,200\text{원/l}] \times 7\text{시간} \div 34\text{실} = 8,526\text{원}$
- 1일 전기료(조명 전력비) = $0.25\text{kW} \times 123\text{원/kWh} \times 8\text{시간} = 246\text{원}$
- 1일 냉·온수 = 1인 1박당 : 온수100 l + 수도150 l 로 적용
 = (온수가열 연료비 + 취수전기료) × 2인
 = $\{[100\text{ l} \times (50^\circ\text{C} - 15^\circ\text{C}) \div 8,000\text{Kcal/l} \div 0.7 \times 1,200\text{원/l}] + [0.25\text{m}^3 \div 15\text{m}^3/\text{h} \times (5.5\text{kW} + 7.5\text{kW}) \times 123\text{원/kWh}]\} \times 2\text{인} = 1,500\text{원}$
- 오수처리비 = [1인당 물사용량× 연간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량×kWh당 단가
 ÷총 지하수사용량+[1인당 물사용량×연간 오수처리장 위탁용역비
 ÷총 지하수사용량]×2인
 = $[0.25\text{m}^3 \times 40,000\text{kWh} \times 123\text{원/kWh} \div 11,000\text{m}^3] + [0.25\text{m}^3 \times 3,456,000\text{원} \div 11,000\text{m}^3] \times 2\text{인} = 381\text{원}$
- 방역소독비 = 생활관면적×m²당 소독비(30일 기준)÷100실÷30일
 = $3,678\text{m}^2 \times 30\text{원} \div 100\text{실} \div 30\text{일} = 37\text{원}$
- 청소비 = 청소부 1인 1일 1개층(34실)

$$= 1인 \times 40,000원 \div 34실 = 1,176원$$

○ 세탁비 = 1인당 1주일 1회 세탁(침구류)

$$= 2인 \times 5,300원 \div 4일 = 2,650원$$

○ 쓰레기봉투 = 100ℓ 용 봉투×4개(1개 층당)÷34실

$$= 1,770원 \times 4개 \div 34실 = 208원$$

○ 화장지 = 1실당 3개(1주)×600원÷5일

$$= 3개 \times 600원 \div 4일 = 450원$$

○ 기계실, 사감실 당직근무 = 근무인원×당직근무 단가÷34실

$$= 2명 \times 50,000원 \div 34실 = 2,941원$$

□ 1실당 산출금액 : 18,115(냉방) ~ 23,760원(난방) ≒ 20,000원

□ 1인당 산출금액 : 10,000원

※ 공무원생활관은 1실당 2명 수용

※ 도민생활관은 1실당 4명 수용관계로 공무원생활관 산출금액의 50%를 적용하여 1인당 5,000원으로 정하였음

▣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 안

제1조 중 “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39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시설등”을 “시설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1호서식에 의한”을 “제1호서식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호서식에 의한”을 “제2호서식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천재지변 기타”를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사용기간중”을 “사용기간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훼손 또는 망실하였을”을 “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”로 한다.

부칙 본문 단서 중 “제6조 제2항”을 “제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